

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(중개정조례안)

의안 번호	12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동 기금의 융자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3퍼센트에서 무이자로 하여 경기도 및 환경관리공단의 환경보전기금을 융자 받는 업체와의 형평을 이루도록 함 (안 제4조의2제2항제2호).
- 시금고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융자업무를 타 금융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대상 업체의 편익을 도모함 (안 제4조의2제4항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(입법)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4. 2. 27. ~ 2004. 3. 8.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환경보전기금 확대운용 검토보고(방침결정)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2호중 “연 3퍼센트”를 “무이자”로 하고, 동조제4항중 “시금고로”를 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”로 한다.

제4조의4제4항중 “한하며, 응자 금융기관은 시금고와 동일하여야 한다”를 “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환경위생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환경위생과장 김 진 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환경관리담당 이 석 천
	담당자 성명·전화	유 정 숙 (행정 2885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 (보조·융자대상 및 조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융자금의 대출금리 : <u>연 3퍼센트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<u>시급고로</u>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융자의 청차, 이자의 불입, 이 자차액보전금, 융자취급수수료 등 필요한 사 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의2 (보조·융자대상 및 조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융자금의 대출금리 : <u>무이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<u>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의4 (이자차액 보조사업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보 조액은 제4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한 이자차 액보전율 범위이내에 <u>한하여, 융자 금융기관</u> <u>은 시급고와 동일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4조의4 (이자차액 보조사업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<u>한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